

<b>제2023-82호</b> 2023년 10월 4일(수)	<b>시 보</b>  여수시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434호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435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6
○ 여수시 고시	제2023-4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우두리 825)	8
○ 여수시 고시	제2023-4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둔전리 1494)	9
○ 여수시 고시	제2023-4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소라면 대포리 1318-5)	10
○ 여수시 고시	제2023-4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1
○ 여수시 고시	제2023-44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2
○ 여수시 고시	제2023-448호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14
○ 여수시 고시	제2023-4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714호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17
○ 여수시 공고	제2023-2716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331-7외3필지)	42
○ 여수시 공고	제2023-2717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우두리 697-41]	44
○ 여수시 공고	제2023-272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 ~ 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46
○ 여수시 공고	제2023-2729호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차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53
○ 여수시 공고	제2023-2730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62
○ 여수시 공고	제2023-273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73
○ 여수시 공고	제2023-2747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덕양리 1011, 1018-2번지)	116
○ 여수시 공고	제2023-2748호	여수 묘도녹색산업단지(일반) 조성사업(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18
○ 여수시 공고	제2023-2764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119
○ 여수시 공고	제2023-2767호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2

<b>회 람</b>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 여 수 시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23. 11. 1. ~ 2024. 5. 15.

2.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 입 산 통 제 : 10개산 2,351ha
- 등산로 폐쇄 : 4개구간 6.5km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10개산 (20개소)				1,718필지	2,351.2	
봉황산	여수시	돌산	신복리	산75외 177필지	160.8	
황새봉	여수시	소라	봉두리	산205외 70필지	190.6	
수암산	여수시	율촌	가장리	산4외 39필지	145.1	
수암산	여수시	율촌	취적리	산220외 21필지	103.5	
고봉산	여수시	화양	화동리	산264외 46필지	87.3	
고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49-1외 23필지	24.4	
봉화산	여수시	화양	장수리	산172외 35필지	83.4	
비봉산	여수시	화양	옥적리	산142외 114필지	204.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창무리	산58-11외 17필지	63.5	
비봉산	여수시	화양	용주리	산220외 8필지	32.9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천리	산46-1외 19필지	21.7	
비봉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376-5외 13필지	22.7	
전봉산	여수시	주삼		산1-1외 42필지	53.4	
전봉산	여수시	봉계		산25외 6필지	41.1	
가마봉	여수시	소라	대포리	산40외 197필지	340.0	
서이산	여수시	화양	이목리	산1외 395필지	253.7	
서이산	여수시	화양	서촌리	산103외 131필지	139.3	
제석산	여수시	신덕		산1외 23필지	40.4	
제석산	여수시	상암		산167외 54필지	49.4	
제석산	여수시	낙포		산12외 268필지	293.1	

□ 등산로폐쇄 지정현황

산 명	소재지			구 간	거리 (km)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2				4개 구간	6.5	
현천뒷산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정상	2.0	
	여수시	소라	현천	국사암→약수터→정상		
부 암 산	여수시	오천		호명고개→정상	4.5	
	여수시	신덕		신덕→정상		



서이산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1외 395필	산1, 산1-1, 산1-2, 산2, 산4, 산5, 산5-1, 산6, 산6-1, 산7, 산8, 산8-2, 산9, 산10, 산11, 산12, 산13, 산14, 산15, 산16, 산17, 산18, 산19, 산19-2, 산20-1, 산20-2, 산20-3, 산20-4, 산20-5, 산20-6, 산20-7, 산20-8, 산20-9, 산20-10, 산20-11, 산20-12, 산20-13, 산20-14, 산20-15, 산20-16, 산20-17, 산20-18, 산20-19, 산20-20, 산20-21, 산20-22, 산20-23, 산20-24, 산20-25, 산20-26, 산20-27, 산20-30, 산20-31, 산20-32, 산20-33, 산20-34, 산20-35, 산20-36, 산20-37, 산20-38, 산20-39, 산20-40, 산20-41, 산20-43, 산20-45, 산20-46, 산20-47, 산20-48, 산20-49, 산20-50, 산20-51, 산20-52, 산20-53, 산20-54, 산20-55, 산20-56, 산20-57, 산22, 산22-1, 산22-2, 산22-3, 산22-4, 산22-5, 산22-6, 산23, 산24, 산24-2, 산25, 산25-3, 산25-5, 산26, 산27, 산29, 산29-1, 산29-2, 산29-3, 산30, 산30-1, 산31, 산32, 산32-1, 산32-2, 산32-3, 산32-4, 산32-5, 산33, 산34, 산35, 산36, 산36-1, 산36-2, 산36-3, 산36-4, 산36-5, 산36-6, 산36-7, 산36-8, 산36-9, 산37, 산37-1, 산37-2, 산37-3, 산37-4, 산37-5, 산37-6, 산37-7, 산37-8, 산37-9, 산37-10, 산37-11, 산37-12, 산37-13, 산37-14, 산37-15, 산37-16, 산37-17, 산37-18, 산37-19, 산37-20, 산37-21, 산37-22, 산37-23, 산38, 산39, 산40, 산41, 산42, 산43, 산44, 산45, 산46, 산47, 산48, 산49, 산50, 산51, 산52, 산53, 산53-2, 산53-3, 산54, 산54-3, 산54-4, 산55, 산56-1, 산56-2, 산56-3, 산57, 산58, 산59, 산59-4, 산59-5, 산60, 산60-1, 산60-2, 산60-3, 산60-4, 산61, 산61-1, 산62, 산62-1, 산62-2, 산62-4, 산63, 산63-1, 산63-2, 산63-3, 산63-4, 산63-5, 산63-6, 산65-1, 산65-2, 산66, 산67, 산68, 산69, 산70-1, 산70-2, 산70-3, 산70-4, 산70-5, 산70-6, 산72, 산72-1, 산72-2, 산72-4, 산74, 산75, 산76, 산76-2, 산78, 산79-1, 산79-2, 산79-3, 산79-4, 산79-6, 산79-7, 산79-8, 산79-9, 산79-10, 산79-11, 산79-13, 산79-16, 산79-19, 산80, 산81-1, 산81-2, 산81-3, 산81-4, 산82, 산83, 산84, 산84-1, 산84-2, 산84-3, 산85, 산85-4, 산85-5, 산85-6, 산85-7, 산85-8, 산85-9, 산86, 산87, 산89, 산90, 산90-1, 산91, 산92, 산92-1, 산93, 산94, 산95, 산96-1, 산96-2, 산97, 산98, 산98-3, 산98-4, 산98-5, 산98-6, 산98-8, 산99, 산99-2, 산99-3, 산99-8, 산99-9, 산99-10, 산99-11, 산100, 산100-1, 산101, 산101-2, 산101-3, 산101-5, 산101-6, 산101-7, 산101-8, 산104-2, 산104-3, 산104-4, 산105, 산105-3, 산105-4, 산109, 산109-4, 산109-5, 산110-1, 산112, 산112-3, 산112-5, 산114, 산114-2, 산115-1, 산115-2, 산116-1, 산118-1, 산118-2, 산119, 산120, 산120-3, 산121, 산121-2, 산122, 산122-2, 산123-1, 산124, 산124-1, 산124-3, 산125, 산126, 산127, 산128-1, 산129, 산129-1, 산129-2, 산129-3, 산129-4, 산129-5, 산129-6, 산130, 산131, 산132, 산132-1, 산133, 산134, 산135, 산136, 산138, 산139, 산140, 산140-1, 산140-2, 산140-3, 산140-4, 산140-5, 산140-6, 산140-7, 산140-8, 산140-9, 산140-10, 산140-11, 산140-12, 산141, 산141-1, 산141-2, 산141-3, 산142, 산142-1, 산143, 산144, 산144-1, 산144-2, 산144-3, 산144-4, 산144-5, 산144-6, 산144-7, 산144-8, 산145, 산146, 산146-2, 산146-3, 산146-4, 산146-5, 산146-6, 산146-7, 산146-8, 산146-9, 산147, 산147-1, 산148, 산149, 산150, 산151, 산151-3, 산152, 산152-1, 산153, 산154, 산155, 산155-1, 산157, 산157-1, 산157-2, 산157-3, 산157-4, 산158, 산159, 산160, 산161-1, 산161-2	253.7	
서이산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103외 131필	산103, 산104, 산105, 산109, 산110-2, 산112-3, 산112-9, 산112-10, 산112-11, 산114-1, 산114-2, 산115, 산116, 산117, 산118, 산119, 산120, 산121, 산122, 산123, 산124, 산125, 산126-1, 산126-2, 산126-3, 산126-4, 산126-5, 산127, 산128, 산129, 산130, 산131, 산132, 산133, 산133-1, 산133-2, 산134, 산135, 산136, 산137-1, 산137-2, 산137-3, 산137-4, 산137-5, 산137-6, 산137-7, 산137-8, 산137-9, 산137-10, 산137-11, 산137-12, 산137-13, 산137-14, 산137-15, 산137-16, 산137-17, 산137-18, 산137-19, 산137-20, 산137-21, 산137-22, 산137-23, 산138, 산139, 산140, 산141, 산142, 산143, 산144, 산145, 산146, 산147, 산148, 산149, 산150, 산151, 산154, 산154-1, 산155, 산158-2, 산160, 산161, 산162, 산163, 산164, 산165, 산166, 산167, 산168, 산169-1, 산170-1, 산170-2, 산171, 산172, 산173, 산174, 산175, 산176, 산177, 산177-1, 산178, 산179, 산180, 산181, 산183, 산184, 산185-1, 산186, 산186-2, 산187-1, 산188, 산189, 산190, 산191, 산192, 산193-1, 산193-2, 산193-3, 산194-1, 산195, 산196, 산196-1, 산197, 산197-2, 산197-3, 산198, 산199, 산200, 산201, 산202, 산203, 산204, 산204-2, 산204-3	139.3	
제석산	여수시	신덕동		산1외 23필	산1, 산1-1, 산16, 산17-1, 산21, 산23-1, 산24, 산25, 산26-1, 산26-2, 산26-3, 산26-4, 산26-5, 산26-6, 산29, 산30, 산31, 산32, 산32-3, 산33, 산34-1, 산34-2, 산34-8, 산35	40.4	
제석산	여수시	상암동		산167외 54필	산167, 산167-1, 산167-2, 산167-3, 산167-4, 산168, 산169, 산170, 산170-1, 산171, 산172-2, 산172-3, 산172-4, 산172-5, 산173-1, 산173-2, 산174, 산175-1, 산175-2, 산175-3, 산175-4, 산175-6, 산176-1, 산176-2, 산176-3, 산176-4, 산176-5, 산177, 산178, 산179, 산180, 산181, 산182-1, 산182-2, 산182-3, 산183, 산184, 산185-1, 산185-2, 산186, 산187, 산189, 산190-1, 산191-1, 산192, 산193, 산194-1, 산194-2, 산194-3, 산195, 산195-2, 산196, 산197, 산198, 산199	49.4	
제석산	여수시	낙포동		산12외 268필	산12, 산34-1, 산36, 산36-1, 산36-3, 산36-5, 산37, 산38, 산39, 산40, 산41, 산41-1, 산41-2, 산42, 산43, 산44, 산45, 산46, 산47, 산48, 산49, 산56, 산57-2, 산57-3, 산57-4, 산58, 산58-1, 산59, 산63, 산63-1, 산69-11, 산70, 산71-1, 산71-3, 산71-4, 산71-9, 산71-17, 산71-22, 산77-1, 산77-3, 산77-4, 산77-5, 산77-6, 산77-7, 산77-8, 산77-9, 산78, 산104-1,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08-1, 산109, 산109-1, 산110, 산111, 산112, 산113, 산114, 산114-1, 산115, 산116, 산117, 산118, 산119, 산120, 산121, 산122, 산125, 산126, 산127, 산128, 산129, 산129-9, 산129-11, 산131-1, 산131-5, 산131-9, 산134, 산135-1, 산138-1, 산142, 산143, 산144, 산144-2, 산145, 산146, 산147, 산148, 산148-2, 산148-3, 산148-4, 산148-5, 산148-6, 산150, 산151, 산151-1, 산152, 산152-1, 산153-2, 산155-2, 산164, 산165-1, 산165-2, 산165-3, 산165-6, 산165-7, 산165-9, 산165-10, 산165-11, 산165-12, 산166, 산166-1, 산167, 산167-1, 산168, 산169-1, 산169-2, 산169-3, 산169-5, 산169-6, 산170, 산171, 산172-2, 산172-3, 산172-4, 산172-5, 산173-1, 산174-1, 산174-3, 산176-1, 산176-2, 산176-8, 산176-9, 산176-10, 산177-2, 산178-1, 산179, 산179-1, 산179-2, 산179-3, 산181, 산181-2, 산182-1, 산182-8, 산182-9, 산182-10, 산183-1, 산183-3, 산183-4, 산184-1, 산184-5, 산184-6, 산186-2, 산187-1, 산188-3, 산189-2, 산191, 산193, 산196, 산197, 산199, 산201-1, 산201-4, 산201-5, 산201-6, 산225-1, 산226-1, 산234-1, 산264-11, 산264-12, 산281-1, 산282, 산288, 산291-1, 산292, 산293, 산295-4, 산298-1, 산298-6, 산298-7, 산312, 산315, 산316-1, 산316-3, 산317, 산318, 산322-3, 산333-1, 산333-2, 산333-3, 산333-4, 산333-5, 산333-6, 산334, 산336, 산337, 산338, 산338-1, 산339, 산339-1, 산340, 산340-1, 산341, 산341-1, 산342, 산342-1, 산342-2, 산343, 산343-6, 산344-1, 산344-2, 산344-7, 산344-8, 산345, 산346, 산347-1, 산347-2, 산347-3, 산348-1, 산348-8, 산348-10, 산348-11, 산348-12, 산348-13, 산348-14, 산348-15, 산349, 산349-5, 산349-7, 산349-8, 산350, 산351, 산352, 산352-1, 산353, 산354, 산354-1, 산355, 산356, 산356-1, 산357, 산357-2, 산358-1, 산358-2, 산358-3, 산359, 산360-1, 산360-3, 산360-5, 산360-6, 산360-7, 산361, 산362-1, 산362-3, 산363-1, 산363-4, 산363-9, 산364, 산365, 산365-1, 산366, 산367-1, 산368, 산369-1, 산369-3, 산369-4, 산370, 산371, 산371-1, 산371-2, 산371-3, 산371-4, 산372, 산373, 산373-1, 산375, 산375-1	293.1	

여수시 고시 제2023-435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9. 27.

여수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5,856	-	155,856	100.0	
생산관리지역	133,782	감) 133,782	-	85.8	
자연환경보전지역	22,704	감) 22,704	-	14.2	
계획관리지역	-	증) 155,856	155,856	100.0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40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33,782	100% 이하	○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53-2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22,074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수시 화정면 외 5개 읍면동	413,993,840 (372,741,966)	감) 22,074	413,971,766 (372,741,966)	( ) 해면

주) 기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09호(2022.07.21.)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m <sup>2</sup> )	결정(변경) 사유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853-2번지 일원	413,993,840→413,971,766 감) 22,074	○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관련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43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1. 허가번호: 제2023-00046호
2. 허가일자: 2023년 9월 12일
3. 점용·사용의 장소: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25
4. 점용·사용의 면적: 4㎡
5. 점용·사용의 기간: 2023-09-12 ~ 2028-09-11
6. 점용·사용의 목적: 주택, 근린생활시설, 호텔 부지 진출입로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개인(이용찬)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17, 포레나 여수 웅천  
디아일랜드 D동 20층 2003호 (웅천동)

2023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43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1. 허가번호: 제2023-00048호
2. 허가일자: 2023년 9월 12일
3. 점용·사용의 장소: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494
4. 점용·사용의 면적: 59㎡
5. 점용·사용의 기간: 2023-09-12 ~ 2028-09-11
6. 점용·사용의 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개인(최상연)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20, 3동 504호 (여서동, 금호아파트)

2023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1. 허가번호: 제2023-00043호
2. 허가일자: 2023년 9월 20일
3. 점용 사용의 장소: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318-5
4. 점용 사용의 면적 및 기간

구분	점용사용의 면적	점용사용의 기간
일시	89㎡	2023-09-20 ~ 2024-12-31
영구	5㎡	2025-01-01 ~ 2038-09-19

5. 점용 사용의 목적: 광양( I 단계) 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시설공사(여수구간) 관련 관로매설 (D1350mm, 강관)
6.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2023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44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9-009 (2023. 9. 25.)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27번지 일원 (34° 19' 8.07" N, 127° 36' 25.98" E)	900㎡	전남 여수시	㈜삼해개발	풍향계측기 설치	' 23. 5. 8. ~ ' 23. 9. 7.	' 23. 9. 8. ~ ' 24. 1. 7.
2019-082 (2023. 9. 25.)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61번지 지선(평도) (34° 19' 45.72" N, 127° 25' 4.45" E)	2,819㎡	전남 영광군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	해상(풍황)계측기 설치	' 22. 10. 7. ~ ' 23. 10. 6.	' 23. 10. 7. ~ ' 24. 10. 6.
2019-083 (2023. 9. 25.)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366-1번지 지선(소거문도) (34° 19' 47.50" N, 127° 25' 58.18" E)	2,819㎡	전남 영광군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	해상(풍황)계측기 설치	' 22. 10. 7. ~ ' 23. 10. 6.	' 23. 10. 7. ~ ' 24. 10. 6.

2023. 9. 25.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7.

여 수 시 장 (인)

### ○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1032-4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19 (주삼동)	20230927		20191022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지명 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66-9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3길 84	20230927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여수시(허가과), 061-659-4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여수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범죄예방 건축기준 체크리스트 제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고시 제2023 - 44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3-55 (2023. 9. 27.)	여수시 남면 화태리 63-1번지 일원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환경저해시설 정비	870	'23. 10. 3. ~ '24. 10. 4.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	환경부(국립공원 공단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	

2023. 10. 4.

여 수 시 장

##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여수시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예술인촌」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0. .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0. 4.(수) ~ 10. 18.(수) / 15일간
2. 위탁시설 현황
  - 가. 시설명 : 여수시 예술인촌
  - 나. 부 지 :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516-2(구 옥적초등학교), 9,808m<sup>2</sup>
  - 다. 건 물 : 작가동·전시관·생활문화센터·관사, 2층/5동 1,486.17m<sup>2</sup>
3. 위탁사무
  - 가. 예술인촌 재산의 선량한 관리
  - 나. 예술인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시행
  - 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 라. 주민의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 마.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유지 관리
  - 바. 도난·화재 등 재난 예방 조치
4.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2024. 1. 1. ~ 2025. 12. 31.)
5. 응모자격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지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6. 위탁조건

- 가. 재산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보험·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예산지원 관련
  -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지원받은 시비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여수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다.

## 7. 제출서류

### 가-1. 법인(단체)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 인감계(서식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1)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서식 4)
-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서식 5)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가-2. 개인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2)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나.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서식 8)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1부, CD 1매 또는 USB 1개  
※ 추가로 PPT 원본 파일 이메일 송부 요망(awesome617@korea.kr)

다. 예산 산출 내역서(서식 9~10) 각 1부

- 시비보조금 : 연간 15,000천원 기준으로 작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0부(서식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2)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10. 18.(수)(3일간, 접수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9. 수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운영사항,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
  - 심사일 별도 통지
  - 수탁신청 대표자(또는 위임자)는 15분 이내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선정된 수탁자가 협약 대상이며, 여수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단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심사발표 : 선정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참고] 평가기준

<법인·단체>

심사항목		평가기간	배점	심사	평가기준					
합계			100							
소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20		5년 이상	4~5년 미만	3~4년 미만	2~3년 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계			10							
재정사항 (10)	1.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022년도 기준	5		100% 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5	4	3	2	1					
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5		100% 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5	4	3	2	1					
소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계			50							
종합판단 (5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5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0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사항 평가가 어려울 경우 종합판단 점수를 70점으로 한다.

<개인>

심사항목		평가기간	배점	심사	평가기준					
합계			100							
소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20		5년 이상	4~5년 미만	3~4년 미만	2~3년 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계			60							
종합판단 (6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6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0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10.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의 결정을 따름
- 신청자는 심사일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탁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정다결 주무관(☎659-4694) 문의

##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재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장 귀하</p>																
<p>첨부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td> <td style="width: 50%;">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td> </tr> <tr> <td>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td> <td>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td> </tr> <tr> <td>4. 서약서 1부</td> <td>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td> </tr> <tr> <td>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td> <td>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td> </tr> <tr> <td>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td> <td>7.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td> </tr> <tr> <td>10. 예산산출내역서 1부</td> <td>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td> </tr> <tr> <td>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td> <td>9.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td> </tr> </table>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7.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	10. 예산산출내역서 1부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9.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7.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															
10. 예산산출내역서 1부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9.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2 : 개인>

##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재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p>「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li><li>2.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li><li>3. 서약서 1부</li><li>4.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1부</li><li>5.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li><li>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li><li>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li><li>8.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10부</li><li>9. 예산산출내역서 1부</li><li>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li><li>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li><li>12.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li></ol>		

<서식 2>

##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신청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신청부터 협약 체결까지 여수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수탁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10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1 : 법인 . 단체>

##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명 :

위 법인(단체)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위 서약인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2 : 개인>

## 서 약 서

○ 성 명 :

위 개인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 법인(단체) 일반 현황

- 1. 명 칭 :
- 2. 소 재 지 :
- 3. 설립근거 및 목적 :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요 이 력

- 5. 구 성 인 력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 7. 주 요 사 업 내 용
- 8. 단체(법인)의 기구(도표)

※ 증빙자료첨부 : 법인(단체)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또는 규약) 1부.

제출인 법인(단체)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 법인(단체) 재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2 회계년도	비 고
1. 총 자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총 부 채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총 기본금(자기자본)		
8. 출연 기본금		
9. 잉여·적립금 등		
10. 총 매출액		
11. 부채비율(%) (고정부채+유동부채/자기자본)		

주)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첨부

<서식 6>

##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관련기관 (지원기관)	비고
계					

※ 참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구분 작성
- 증빙서 첨부

여수시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3. 8. 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여주시 예술인촌 ◇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2023. 10. .

○○○○(법인.단체.개인) (인)

# 목 차

1. 목표 및 비전제시		00
2. 사업계획		00
	- 여수시 예술인촌 총괄 운영 계획	
	- 여수시 예술인촌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횟수, 연/월간 추진계획	
	- 국가 또는 타 기관 사업 연계추진 계획	
	- 시민서비스 강화 계획	
3. 재정 운영계획		00
	- 수입계획 : 위탁금, 자부담 등	
	- 지출계획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4. 조직 운영계획		00
	- 인원 및 조직구성도,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5. 여수시 예술인촌 홍보계획		00
6. 기타 사항		00

※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상기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참 고 사 항

1. 수탁운영 사업계획서는 작성내용 및 목차를 준수하여 20매 이내로 작성 후 인쇄물로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2.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인쇄 및 단면 제본 기준
  - 규 격 : A4(210× 297mm)용지, 한글(휴먼명조 15), 문단 간격 180%, 좌우여백은 각각 25, 상하 여백은 각각 15
  - 제 본 : 좌철
  - 쪽번호 : 가운데 하단에 1, 2, 3으로 표기
3.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운영계획서 설명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20매 이내) 1부와 CD 1매 또는 USB 1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상의 전문인력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허위 작성으로 인정하겠음.

<서식 9>

## 예산산출내역서(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민간위탁금			
2. 회비수입			
3. 기부금 등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민간위탁금은 연간 15,000천원 기준으로 작성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 예산산출내역서(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인건비			
2. 운영비(경상경비)			
3. 시설비			
1) 시설장비유지비			
2) 기타			
4. 사업비			
1) 프로그램 운영			
2) 홍보비			
3) 기타			
5. 기타사업비			
○			
○			
○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 여수시 예술인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1. 사업개요

사업명	위·수탁기간	수탁자 현황			최근 3년 재해현황
		수탁자명	종사자수	민간위탁금	
여수시 예술인촌 사무(운영) 민간위탁	2024. 1. 1. ~ 2025. 12. 31.			15,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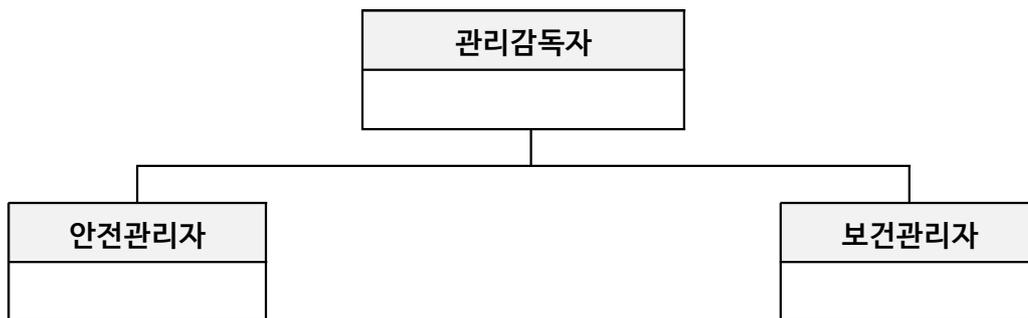
## 2.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방침

- 
- 
- 

안전보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비상연락망 :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 기재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방안 : 여수시(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팀장, 사업담당자)  
+ 수탁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예산**

-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
-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대응계획**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등
- 
- 

**3. 안전보건관리활동**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교육과정, 일정, 인원, 방법 등
- 
-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 

**□ 위험성 평가 실시**

- ※ 시설물 관리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정기/수시)

- 
-

#### 4. 유해·위험물질 목록

순번	유해· 위험물질	용량	작업장소	사용량	저장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위급상황시 조치방법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5. 사용 기계·기구·설비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33-16번지 외 2필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129	5	1,271		
돌산읍 평사리 331-7			1,07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평사리 산106-5			41		
돌산읍 평사리 산113-3			101		
돌산읍 평사리 산113-2			57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41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돌산읍 우두리 697-41	14	2	23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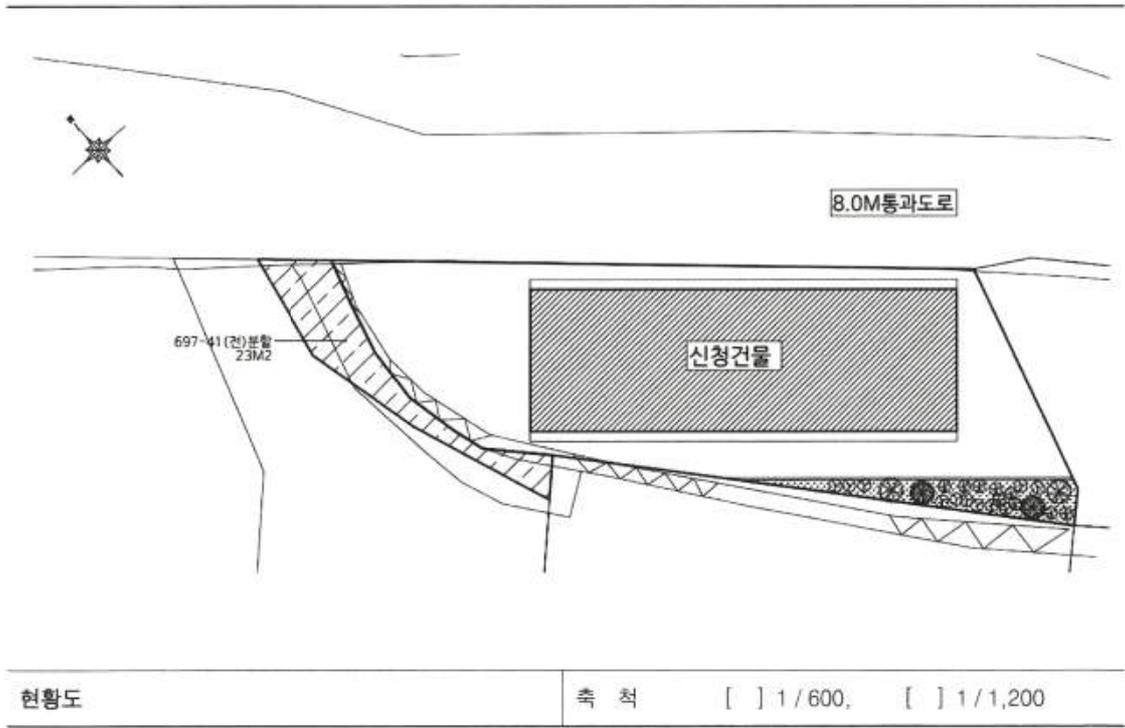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

여 수 시 장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7.

### 여 수 시 장 (인)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규 모 : L=450m, B=10m(인도포함)
- 사 업 기 간 : 2023. 7. 7. ~ 2024. 12. 31.

#### 2. 열람공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2.(15일간)

####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http://www.yeosu.go.kr) 게재

####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를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3)로 문의바랍니다.



# 울촌면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등학교도로확장공사

가격시점 : 2023.

작성자 : 공무원 장문희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3,835		549								
1	울촌면 조화리	193-7	664	193-11	4	답	답		전라남도 (전라남도교*감)				
2	울촌면 조화리	182	16,870	182-6	23	학	학		전라남도 (전라남도교*감)				
3	울촌면 조화리	165-5	179	165-13	17	답	답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	서*심				
4	울촌면 조화리	165-12	179	165-15	35	답	답	여수시 울촌면 동산개길 4*	서*심				
5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17.1/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8, *동 5*2호(사파동, 동양무궁화아파 트)	황*영				
5-1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3.3/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1*번길 *2(소답동)	안*주				
5-2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3/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7*, 1*1동1**1호(오동동, 서광 아침의빛)	진*현				
5-3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3.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9번길 3*(명서동)	최*녀				

5-4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9.3/267	답	답	경남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1*01번길 1*5	조*재				
5-5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7/267	답	답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2*3,1*1동13*1호(옥곡동,웰 리치성암)	이*자				
5-6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6/267	답	답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6* 1*1동19*8호(청학동,미주아 파트)	조*훈				
5-7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2.8/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1*2동8*1호(신촌동,디에스 아이존빌아파트)	박*식				
5-8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17.2/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9*,1*2동8*1호(신촌동,디에스 아이존빌아파트)	김*남				
5-9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3/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길 2*,2*1호(회원동,태화맨션)	배*희				
5-10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3/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0,1*동 5*6호(용호동,무학아파트)	이*미				
5-11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6/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5*8,2*1동2*1호(대원동,대원 대동2차아파트)	손*미				
5-12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6/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2*1,1*7동19*2호(창원감계푸 르지오)	김*희				
5-13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1*5동5*3호(주공아파트)	주*희				
5-14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6-1,2동1*0호(현대아파트)	주*금				
5-15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21.6/267	답	답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3,1*9동1*06호(금산흥한골 드빌)	민*식				
5-16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3/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35번길 1*-8(동정동)	이*겸				
5-17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6/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613번길 5,6*1호(삼우아파트)	이*옥				
5-18	읍촌면 주화리	166-1	267	166-5	13*4.6/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821,1*08호(한주아파트)	정*숙				

5-19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2/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59,2*6동 16*4호(코오롱하늘채2차아파 트)	구*민	**세무서장		압류(채납징 세)
5-20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12.1/267	답	답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군로 14*3-7*	성*남			
5-21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3.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9번길 19-30,2*3동1*4호(용호동,롯데 아파트)	성*열			
5-22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김해시 을하2로 178, 12*9동1*02호(을하동,을현마 을주공12단지 아파트)	김*자			
5-23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8.9/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54번길 18-*1(서상동)	이*선			
5-24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5길 45, 1*2호(석전동,도라지연립)	강*화			
5-25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1*5동5*4호(상남동,성원 아파트)	김*하			
5-26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1/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64번길 1*(용호동)	김*화			
5-27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4.4/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17번길 21,1*1호(소담동,금우아람빌 라)	박*희			
5-28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18.1/267	답	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47, 6*1호(외동,외동대동아파트)	배*주			
5-29	울촌면 조화리	166-1	267	166-5	13*28.8/267	답	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	주식회사 **개발	**세무서장		압류(법인납 세)
6	울촌면 조화리	167	433	167-1	29	답	답	여천군 울촌면 조화리 7*	조*현			
7	울촌면 조화리	170-6	496	170-16	67	답	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	조*원			
8	울촌면 조화리	173	370	173-3	31	대	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27-29 3*2	박*웅			
9	울촌면 조화리	174	1,092	174-3	38	답	답	순천시 조례동 1362 조례현대아파트 5*1-14*3	채*숙			

10	울촌면 조화리	175	755	175-9	25	답	답	여수시 미평동 488-1 귀인아파트 3*5-3*6	강*준				
11	울촌면 조화리	175-2	430	175-10	1	대	대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5-*	유*길				
12	울촌면 조화리	175-3	125	175-11	41	답	답	순천시 원가곡길 75, 1*4동3*1호(가곡동, 양우내안 애아파트)	박*영				
13	울촌면 조화리	126	369	126-3	48*1/2	답	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당산푸르지오아파트 1*6동6*2호	김*태				
13-1	울촌면 조화리	126	369	126-3	48*1/2	답	답	인천시 동구 화수동 3*	박*규				
14	울촌면 조화리	127	394	127-6	26	답	답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70, 1*2동13*3호(만촌동, 만촌보 성타운)	이*숙				
15	울촌면 조화리	131-8	214	131-20	31	답	답	경남 김해시 우암로 106,3*7동13*3호(내동, 경원 마을건영아파트)	임*업	**양돈협동조 합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3*(부원동)	근저당권	
16	울촌면 조화리	130	553	130-3	17	답	답	여수시 여서로 181,6*5동151*호(여서동 부영아파트)	김*현	여수**업 협동조합	여수시 어항단지 2*0(봉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17	울촌면 조화리	131-1	198	131-18	24	답	답	전북 익산시 무왕로 32길 85,1*8동10*4호(팔봉동, 기안 파인골드빌)	이*희				
18	울촌면 조화리	122-7	1,266	122-14	37	전	전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7,*층(오치동)	***시티주식회사				
19	울촌면 조화리	122-8	869	122-15	103	전	전	여수시 여서동 484 현대아파트 3*1-8*9	박*정	여수**농업 협동조합	여수시 서교동 54*-2(신여서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 ‘23~’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여수시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간 : 2023.10.1.~2024.2.29.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장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시 처분)

5. 명령의 내용 : 행정명령 10건(붙임참조)
6. 위반시 처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사항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 (☎061-659-4445)

## 행정명령 공고

###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툽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既 시행

##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산(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초과 농장) 50m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 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li> <li>-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li> <li>*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li> <li>-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li> </ul> </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li> <li>-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li>*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li> </ul>
3	<p>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p>○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li> <li>*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li> <li>*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li> <li>**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ul>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li> <li>-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li> </ul>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5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p>○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li> </ul> <p>*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p>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6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	<p>○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초과 농장)	<p>내로 진입 금지</p>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p>-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p>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p> <p>-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p> <p>-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p> <p>-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p> <p>○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p> <p>-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p> <p>-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p> <p>-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p>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p> <p>-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p> <p>*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p>
<p>○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p> <p>○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 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1**

**'23/'24년 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023.10.1.~2024.2.29.)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여 수 시 장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 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 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운영기간 : '23. 10. 1. ~ '24. 2. 29.(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000호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023.10.1.~2024.2.29.)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 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 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운영기간 : '23. 10. 1. ~ '24. 2. 29.(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붙임 4****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 · 역류 · 이동제한 · 소독 · 교통차단 · 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여 수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나. 위치: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내용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 금859,000,000원(부가세 포함) (금회 1차분 : 177,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라. 시행기관: 전라남도 여수시(체육지원과)
- 마. 입찰예정시기 : 2023년 10월(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다. 총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전라남도 공고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여수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에서 발주한 신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포함) 수행 완료 실적(중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을 보유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업체 지분율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 2)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1)의 가 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업체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전라남도 내 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4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라.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 설 (건축,토목,기계)	전 기	소 방	계
비 율	85.00%	10.4%	4.6%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배치 인·월수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3. 10. 13.(금) 09:00~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여수시 체육지원과 (☎061-659-3268)

-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

라.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팩스, 쿼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참가등록 제출서류

1) 공문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1]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 지참)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분담비율 표시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6)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실적증명서(해당페이지) 사본 1부

※ 참가등록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 제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주회사)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계획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건축)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7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면접평가서, 업무중첩도) : PDF 파일 형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 면접에 불참 시 면접점수 최하점 적용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점수는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자.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취득한 상위 10개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2장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여수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체육지원과(061-659-3268)로,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659-3176)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2)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사무실)	E-mail	
	핸드폰)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체결 현황 1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9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b>여수시장 귀하</b>			

----- 절 --- 취 --- 선 -----

###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신청서 접수증**

용역명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접수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표자 (대표사)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주소			

2023. 9 . .

접수확인 여수시 체육지원과 직 성명 (인)

##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수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여수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주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응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I. 일반사항 1.	P1 가. 1) ...	1. ... 2. ... 3.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6 나. (1)	

여수시장 귀하

---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여 수 시**  
**체육지원과**

#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 제1장 일반사항

가. 용역명 :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12개월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선정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사업관리 용역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 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

라.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절

마. 용역비 : 859,000천원(VAT포함)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규모

1)공사규모

사업명	공사범위	구조	연면적(㎡)	비고
옹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2,496	

## 2) 용역 범위

- 가) 대상 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조정, 전기, 소방, 통신 등에 대한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 나) 재시공 및 자재 승인 시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사전 발주청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승인토록한다.
- 다)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및 하자보수 지원업무
- 라) 국토교통부 고시 2020-987호(2020.12.1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과업 착수준비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의 전체 분야 업무
  - 세부과업 범위
- 마) 기타 공사의 범위
  -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관,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배수, 가스, 전기 등) 관리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
  -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
  - 계약목적물의 시험운전 및 보증, 인도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공사 관리

단계	업 무 내 용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사업정보관리 시스템의 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시공 단계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도급적정성검토
일반행정업무	
시공 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 제2장 과업내용

###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미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특별사항

-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

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각종 서식 포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다. 용역의 업무범위

-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41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4)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5)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업무
- 6) 소방시설공사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규정 업무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 9) 상주기술자가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 기술자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자 업무수행
- 10) 관급자재(장비 포함)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포함)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 11) TAB 용역수행 시 추진 결과 보고업무 수행
- 12) 기술지원 기술자(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소방)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 13)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 14)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 라. 용역의 착수일

-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착수 · 월간 · 분기 · 수시 · 최종보고서 내용

#### 가. 착수 시 제출서류

- 1) 제출시기 : 착수 시
- 2) 제출서류
  - ① 착수계
  - ② 참여기술자 배치표
  -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 각각의 업무 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 ⑥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 시 대상공사 설계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시공 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서원본

####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험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전기 및 통신설비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매체: CD 5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마. 최종보고서 2부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CD(또는 USB)로 작성한다.
-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작성한다.
-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자 근무사항
    - 상주기술자 출근부
  -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및 현황
    -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 10) 기타 특기사항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현장 공정과 함께 보고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부터 용역완료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 폴더별 등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용역완료 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부(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 제4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각 공종별 해당 분야 기술자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 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 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 기술자 및 기술 지원기술자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여야 하며, 용역 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소방기술자는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자가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마.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배치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일을 기술자 배치 시작(착수)일로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 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장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자

가. 공사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술자의 배치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 기술자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 기술자 배치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 검토 등 발주처 필요 요구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변경·교체 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 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 사.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간 또는 기술자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6장 기술지원기술자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외에 상주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 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 지원기술자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술지원기술자는 발주 기관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라. 기술지원기술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치계획 참조)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월1회 이상(소방공사 주1회)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제작·설치도, 내화상세도 및 부구조체 시공도

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과정에서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포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3)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장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 가. 조치대상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2)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5)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2) 제 2 단계 : 건설기술자 교체
-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자가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 기타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8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자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 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 조건 제7절.4(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 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제9장 주요업무 추진지침

### 가. 회의의 운영

-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2)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 4)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 간 협의 조정토록 한다.

## 5) 회의의 종류

-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 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나. 문서 및 자료관리

- 1) 각종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 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 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 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 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 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4)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공사비 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설계변경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 2) 경미한 설계변경
  -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 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이미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 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소방·조경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기술지원기술자(구조기술사·토목)는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

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다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시에는 “도면 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 1) 일반행정 지원분야
  -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지급 자재 조달 지원

3) 공사진행단계

-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 ⑦ 시공이 공사 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 ㉑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 ㉒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 ㉓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 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 ②④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 ②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기계설비의 TAB 시행의 적정성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과약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4) 공사완료단계

-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 ⑤ 준공검사 시행
-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치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 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 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고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가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⑦ 전기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간선 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동력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조명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 조명자동제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종합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야간 조명설비 및 규정조도의 적정성 검토
-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비상전원 및 발전설비의 적정성 검토
- 공동구 전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옥외 조명시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공사사항

⑧ 소방설비공사

-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 여부 검토 및 확인
- 옥외설비 소방공사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검토 및 조치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소방 전기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조치
-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⑨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타 공종과 Interface 사항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⑩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공사 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 · 검사요령
-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 · 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 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도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기술지원기술자는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자와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⑧ 상주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인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 용지 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10장 특기사항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자세

-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 나. 민원해결

- 1)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복무자세
-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제11장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내용(공사별 3부)

-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다. 기능점검 항목
- 라. 기능점검 절차
-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바. 기자재 운전지침서
- 사.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차.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전기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보일러 및 각종 기계, 전기 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 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 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제12장 기타과업내용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용역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 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 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바.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일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li> <li>○ 시공사 관련 직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 업무 결산</li> <li>○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li> <li>○ 문제점 및 대책토의</li> <li>○ 기타 필요사항</li> </ul>
주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상주기술자</li> <li>○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li> <li>○ 필요시 업무담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결산</li> <li>○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li> <li>○ 지시사항</li> <li>○ 기타 필요사항</li> </ul>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담당감독관)</li> <li>○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li> <li>○ 시공사(현장대리인)</li> <li>○ 분야별 책임기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li> <li>○ 익월 추진사항 토의</li> <li>○ 문제점 및 대책</li> <li>○ 지시사항</li> <li>○ 기타 필요사항</li> </ul>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업무 관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li> </ul>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전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주기관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공정보고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2	○.인력투입현황		
3	○.현안사항		
4	○.업무처리실적		
5	○.향후 수행계획		
6	○.기타사항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19-5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9. 26.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덕양리 1011, 1018-2번지
2. 도로면적 : 192m<sup>2</sup>
3. 도로길이 : 32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222	192	
	소라면 덕양리	1011	공장용지	761	139	
	소라면 덕양리	1018-2	공장용지	1,461	53	



## 여수 묘도 녹색산업단지(일반) 조성사업(토석채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여수 묘도 녹색산업단지(일반) 조성사업(토석채취)”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 여수시장

####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여수 묘도 녹색산업단지(일반) 조성사업(토석채취)
- 나. 위치 : 여수시 묘도동 산150-7번지 일원
- 다. 면적 : 360,092㎡(산업단지 면적 367,754㎡)
-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청안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3. 9. 27.~ 2023. 11. 1.(21일간,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여수시 도시계획과, 여수시 묘도동 주민센터, 광양시 환경과
- 다. 정보통신망 : 여수시 홈페이지(<https://www.yeosu.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 2023. 10. 16.(월) 14:00
- 나. 개최장소 : 여수시 묘도동 주민자치센터

####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 다. 제출처 : 공람장소(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묘도동 주민센터)
- 라.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의견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4.

## 여 수 시 장

####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유송리 251-7번지 일원	남면 대유마을 파제제 건설공사	1,986.75	30년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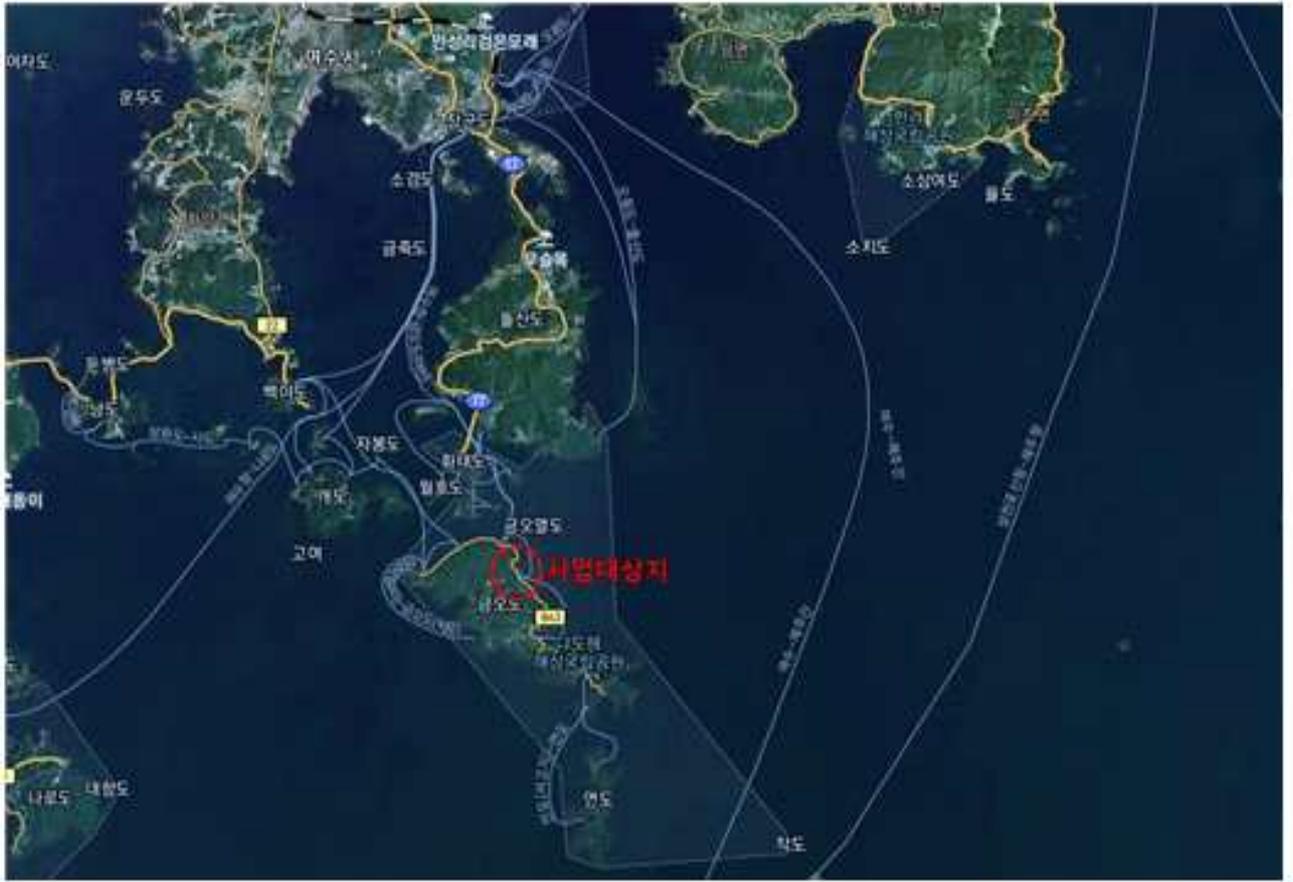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10. 4. ~ 2023. 10. 20.(17일간)

####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10. 4. ~ 2023. 10. 20.(17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공 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시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사항 규정(안 제8조), [별표 1] 개정  
- [별표 1] 시설 이용료 기준에 부가가치세가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

### 3.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 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3년 10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기관: 여수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9677 여수시 흥국로 17,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 E-Mail : skzkok4187@korea.kr
  - 전 화 : 061-659-2420
  - F A X : 061-659-5855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례명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별표 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연습실	1시간	3,000	
동아리실	1시간	3,000	
프로그램실	1시간	5,000	
학습실(세미나실)	1시간	3,000	
다목적홀	1시간	7,000	
콘텐츠제작실	1시간	3,000	
스튜디오	1시간	5,000	

※ 상기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붙임 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				[별표 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연습실	1시간	3,000		연습실	1시간	3,000	
동아리실	1시간	3,000		동아리실	1시간	3,000	
프로그램실	1시간	5,000		프로그램실	1시간	5,000	
학습실(세미나 실)	1시간	3,000		학습실(세미나 실)	1시간	3,000	
다목적홀	1시간	7,000		다목적홀	1시간	7,000	
콘텐츠제작 실	1시간	3,000		콘텐츠제작 실	1시간	3,000	
스튜디오	1시간	5,000		스튜디오	1시간	5,000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 상기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있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